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년월일 : 1999. 8. 2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여성의 능력발전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건립한 사하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관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나. 사용료·수수료 납부, 면제, 반환 절차와 처리요령
- 다. 사용자 준수사항
- 라. 사용료·수수료 수가기준

3. 관계법령

-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5조
- 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1조
- 다. 지방재정법 제26조, 제27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하여성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137-1번지에 둔다

제3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주요사업) 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 가. 취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 교육
 - 나. 취미·교양교육 및 사회의식 교육
 - 다. 전통문화 및 건전한 문화생활 지도·보급
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사업
 - 가. 여성자원 봉사활동 지원
 - 나. 여성단체 및 그룹활동 육성을 위한 협조 지원
 - 다. 취업 및 부업 안내
3. 상담사업
 - 가.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지도
 - 나. 가정문제 및 자녀문제 상담
4. 복지후생사업
 - 가. 강당(예식장) 등 시설대여
 - 나. 재활용센터 운영
 - 다. 어린이놀이방 운영

제5조(시설의 사용) ①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3. 기타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회관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시중은행에 납부한다

제8조(수수료 징수) ① 구청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특정 교육대상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별표 2] 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제9조(사용료·수수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나. 생활보호대상자
-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수수료

- 가.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생활보호대상인 여성
- 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시설을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1조(허가의 취소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 4. 천재지변, 기타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수수료의 반환)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구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회관의 사용 신청후 사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을 다음 각호 1에 의거 반환한다

- 1. 대·소강당의 경우 사용일 10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 2. 대·소강당의 경우 사용일 3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 (사용료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 4. 교육수강료는 교육개시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 5. 교육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액을 반환

제13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 2.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회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2. 기타 회관시설운영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 등 제반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 사용료 기준 (제7조 제2항 관련)

구분	기준	금액	가산금 부과기준
1. 예식대관 (평일주간기준) 가. 대강당 나. 폐백실 다. 피아노 라. 드레스 마. 폐백옷 사. 부대소품 (양초,장갑,방명록 등)	1회(1시간) 1회(1시간) 1회(1시간) 1회(1시간) 1회(1시간) 1회(1시간)	105,500원 60,000원 5,500원 5,000원 (30,000원) 20,000원 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 일·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 가산 매시간 초과시 마다 20%가산 주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 단, 부대소품은 제외
2. 기타 사용료 가. 사진촬영료 (예식에 한함) 나. 비디오촬영료	1회 1회	3,000원 5,000원	
3. 일반대관 가. 대강당 나. 피아노 다. 소장당	1회(1시간) 1회(1시간) 1회(1시간)	60,000원 10,000원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실은 1시간 초과시 마다 10% 가산
4. 냉·난방사용료	1회(1시간)	25,000원	매시간 초과시 마다 15,000원 가산

[별표2]

이용수수료 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금액
1. 교육 가. 기술교육 나. 취미교육 다. 특별강좌	1인 1강좌 1인 1강좌 1인 1강좌	20,000원 20,000원 1,000원